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앞쪽) 5일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	
	주소			
내 용	측정장비 명칭 및 보유대수			
	두께측정을 담당할 조직의 인력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 4.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리절차

